

의안 번호	2370	【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】 <b>심사보고서</b>
----------	------	-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12. 2.(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12. 2.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12. 16.(월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서비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구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(안 제1조 ~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- 다함께돌봄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-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- 비용의 징수에 관한 규정(안 제6조)
- 돌봄협의회의 구성 및 포상에 관한 규정(안 제7조 ~ 제8조)

### 다. 근거법규

-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
- 「아동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동학)

-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, 공적 돌봄을 확대하여 초등학교령기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시행된 다함께돌봄사업의 일환으로서 설치 및 운영되는 시설임.
-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.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근거법규

## 「아동복지법」

**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**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“방과 후 돌봄서비스”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 「아동복지법 시행규칙」

**제21조의2(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기준 등)**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.

##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-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**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- ④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